

시험·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(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일부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가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·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1호	지정취소		
나.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2호	지정취소		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를 거부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3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지정취소
라.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·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				
1)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4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일부 지정취소
2)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	업무	지정취소	

	제4호	일부정지 6개월		
마.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·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5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지정취소
바.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시험·검사를 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6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지정취소
사. 법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·보관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7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지정취소
아. 법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	법 제22조제10항 제8호	업무 일부정지 3개월	업무 일부정지 6개월	업무 일부 지정 취소

비고

- 지정취소란 위반행위를 한 시험·검사기관이 수행 중인 전체 품목에 대한 시험·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하며, 일부 지정취소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·검사업무 수행자격의 취소를 말한다.
- 업무 일부정지란 위반행위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시험·검사업무의 정지를 말한다.
-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중요 시험항목(유해화학물질, 중금속, 기계적인 내구성 및 강도)의 시험을 누락한 경우
 - 불합격한 제품을 합격으로 처리한 경우
 -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 경우
 -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-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
 - 개정된 최신판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-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중요 시험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
 - 일부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을 한 경우
 - 잘못된 외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경우
 - 시험성적서·시험기록지·원시데이터가 없거나 시험성적서·시험기록지·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작성·관리한 경우 등을 말한다.